▌ 예산정책연구 제6권 제1호 2017. 5. pp.68-95 https://doi.org/10.35525/nabo.2017.6.1.003

가구의 소득-재산 결합 분포와 소득세-보유세 부담*

김 진 영**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자산 결합 분포와 소득세와 보유세 합의 누진 여부를 살펴본다.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보유세의 부담을 평가해 보면 소득세에 비교할 때 보유세 부담이 높은 편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보유세의 절대적 부담이 높기 보다는 보유세에 대비할 때 소득세 수준이 낮다는 의미로,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대비 부동산 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높은 우리나라의 소득-자산 분포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분포를 감안하여 소득세와 보유세의 부담 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와 보유세 합의 누진도를 살펴보면 귀속소득의 감안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귀속소득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세와 보유세의 합이 소득에 거의 비례하지만 귀속소득을 감안할 경우 가구수준에서 (소득세+보유세) 부담은 누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을 보유한 약 10% 정도의 일부 가구들 사이에서는 소득대비 소득세와 보유세의 합이 역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보유세, 소득세, 가구의 세 부담, 소득-자산 결합분포

투고일: 2017. 4. 16. 수정일: 2017. 5. 9. 게재확정일: 2017. 5. 16.

* 이 논문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13년 재정네트워크의 거시재정분과에서 작성된 저자의 보고서를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좋은 논평을 통해 연구의 초점을 잡을 수 있게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오류는 저자의 몫이며 이 연구에 담아내지 못한 귀한 논평들은 추후 연구를 통해 담아내고자 합니다.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jykm19@konkuk.ac.kr)

Ⅰ. 서 론

부동산 보유세는 수익자 부담 원칙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되기도 하며 소득재분배나 부동산 투기 억제 또는 가격안정 등의 정책적 기능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부동산 보유세의 이론적 근거와 정책적 기능이 어떻든 간에 가장 단순하면서도 중요하기도 한 사실은 소득이 없더라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납세자들에게 있어서는 "보유세가 어떤 정책 목표를 실현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이 "세금을 얼마나 납부하느냐"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보유세는 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이라는 담세 능력을 근거로 계산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금이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되는지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의 과표 현실화와 함께 증가한 보유세 부담의 증가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대다수 가구들에게 직접적인 세 부담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보유세는 광범위한 조세 저항을 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보유세의 상승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제기되어 온 "거래세 인하-보유세 인상"이라는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보유세가 적정 수준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단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 적정성을 기준으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는 재산과세 부담 수준이 높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높은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즉 자산의 구성으로 볼 때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금액상으로 큰 것은 당연한 측면이 있다. 또한 거래세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래세는 보유세에 비해서는 조세저항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취득 시 이 세금을 감안한 자발적인 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지출을 동반하는 보유세에 비해서는 조세 저항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1] 거래세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높은 세율 때문일 수도 있고 부동산의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유야 어떻든 우리나라의 거래세 비중이 높았고 이어질 국

1) 취득세는 보유세와 비교할 때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좋은 조세의 조건으로 제시한 편리성(convenience)을 갖추고 있다고도 평가할 수 있겠다. 「국부론」에서 제시된 편리성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보유세에 비해서는 취득세가 우월한 측면이 있다.

제비교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높은 중요한 이유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거래세 부담이 높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장래에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율과 관련해서는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 조절 수단으로 이용되어 임시로 세율을 낮춘 사례가 많았으며 2014년에는 항구적인 세율 인하까지 이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의 항구적인 인하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진다고 하더라도 세율인하의 효과를 상쇄하고 남을 만큼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기에 인구감소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라는 큰 추세는 향후 주택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을 예고하고 있다. 즉 세율이라는 측면에서 보거나 부동산 거래의 빈도로 보거나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 보거나 부동산의 거래세의 세수는 향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보유세의 부담은 어떤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특히 가구의 소득과 비교한 가구의 보유세의 부담 수준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소득과 재산을 동시에 고려하여 가구별 소득–재산 분포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세와 보유세를 합한 가구의 세 부담 수준을 평가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소득, 자산액, 자산구성 등의 변수들이 연령과 갖는 관계에 대해 살펴보며 소득–자산 분포를 바탕으로 가구들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소득–보유세 부담 정도를 비교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과거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과연 보유세가 역진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자가 소유 주택의 귀속소득까지 고려하면서 다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이어지는 제Ⅱ장에서는 본고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진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고 국가단위의 거시지표로 소득세와 보유세의 상대적 규모에 대해 국가비교를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보유세 부담에 대한 평가가 나름의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보일 것이다. 제Ⅲ장은 미시자료인 재정패널 자료를 통해 가구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보유세 납부현황을 살펴본 후 소득–재산 결합분포를 바탕으로 가구를 유형화하여 유형별 보유세 부담에 대해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유형별 소득세와 보유세 합의 누진성에 대해 살펴본다. 제Ⅴ장은 맺는말로 분석결과와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들을 정리한다.

Ⅱ. 소득세와 보유세 부담 검토의 배경: 문헌검토와 국제비교

소득대비 주택 가격이 높고 가구 간 부동산 자산의 분포가 매우 불평등한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의 수단으로 인식되거나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인식되는 등 많은 정책 기능이 기대되어왔다.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이러한 정책 기능에 대한 평가가 기존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왔던 반면 세 부담 수준 자체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소득세와 비교한 보유세의 세 부담이나 소득세와 보유세의 합의 부담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번 장에서는 소득대비 보유세에 대한 국내 문헌들을 검토해 본 후, 우리나라에서 보유세의 과도한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다른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

1. 국내 문헌검토

소득과 자산의 분포를 고려할 때 세 부담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적지 않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라는 맥락에서 부동산 자산에 대한 보유세 문제를 살펴본 선행연구로는 박명호(2008, 2011)와 성명재(2012) 등을 들 수 있다. 자산가치와 그 자산의 소유자의 소득 사이에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누진적 보유세 구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소득과 자산의 상관관계가 약할 경우에 일부 계층은 소득에 비해 높은 세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재정패널 3차년도(2010) 자료를 분석한 박명호(2011)의 연구에서는 소득 6분위 이하에서 소득대비 보유세 부담이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현상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가 재산평가 가치에 대해서는 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재분배 기능은 약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고령 가구를 중심으로 높은 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유세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하다는 사실은 성명재(2011)의 연구를 통해서도 재차 확인된 바 있다.

이렇게 이미 기존 연구를 통해 누진적 구조를 가진 보유세가 소득재분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고령가구를 중심으로 높은 세 부담을 주며 역진성을 갖는다는 문제 제기는 많이 이루어져 왔다. 유사한 맥락에서 김경환 외(2012)의 실증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높은 편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소득대비 재산관련 세 부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소득은 없으나 부동산 등의 자산은 많은 고령가구에 있어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김경환 외(2012)의 연구는 미시자료를 통해 세법에 의거한 세 부담액을 도출한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와 매우 유사한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가계금융조사 2011년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들의 자산보유 실태를 파악하고 세법에 따라 가구별 세 부담액을 도출하여 소득대비 세 부담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수이긴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가구들의 보유세 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가구소득대비 보유세 부담 비율에 있어 상당한 역진성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생애주기 상 소득원이 없이 자산을 많이 보유한 상태에서 자산을 바탕으로 소비를 해야 하는 고 연령층의 경우에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높은 보유세 부담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아 60세 이상의 고령가구에 있어 보유세 부담은 평균적으로도 소득대비 3%를 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부담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 살펴보려는 바와 같이 소득세와 보유세 부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두 세금 부담액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보유세의 재분배 기능을 발견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과다를 기준으로 세 부담이 결정되는 보유세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기존연구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현행 보유세가 일부 고령가구들에게 높은 세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부동산세 부담을 평가하되 소득세와 보유세 부담의 합의 분포를 도출하고 이들 두 세목의 세 부담 합이 갖는 누진 혹은 역진적 성격이나, 연령에 따른 세 부담 분포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단순한 형태로나마 귀속소득(imputed income)이 감안될 때의 소득대비 세 부담이 귀속소득을 감안하지 않는 경우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는 점에서 보유세 부담과 관련한 기존연구들과는 차이점을 갖는다.

2. OECD 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부동산 관련 세 부담

앞서 기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가구들의 보유세 부담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부담이 국제적으로도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 미시자료에 대한 분석에 앞서 이번 절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관련 세 부담을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물론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가 우리나라 적정세 부담의 절대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비교는 우리나라 보유세의 독특한 성격을 부각함으로써 보유세 부담의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절에서 이용하는 국가별 세 부담 자료는 이어지는 미시자료와 상응하도록 OECD Revenue Statistics의 2012년도 판에서 제시된 각국의 2010년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우선 총 세수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에 대해 살펴보자. OECD 국가들 중 총 세수에서 부동산 보유세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이다. 그 뒤로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2] 미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총 세수 대비 12%가 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15%로 순위로는 11번째이고 평균값(3.15)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전체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유세 비중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림 1] OECD 국가들의 총세수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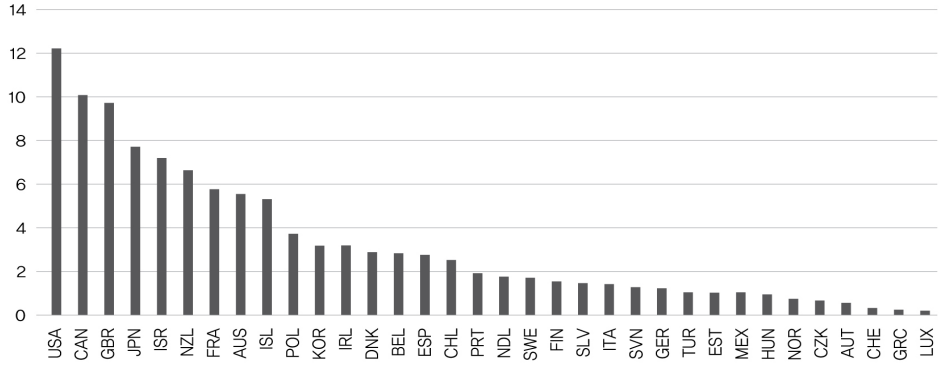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12.

2) 주로 영어권 국가들의 보유세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영어권 국가들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조세 부담률이 낮은 편이다. 조세 부담률이 낮은 나라에서 총 조세 중 보유세 비중이 높은 이유도 향후 탐구해 볼 가치가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거래세만을 놓고 보거나 거래세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세금 전체를 놓고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3] 전체 세수에서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단연 1위이며 다른 나라들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총 조세에서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를 넘는데 동 비중이 OECD 국가들 중 두 번째로 높은 호주의 경우는 4% 미만이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총 조세 대비 자산 거래세는 2%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보유세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미국은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OECD 국가들의 총세수 대비 자산 거래세 비중(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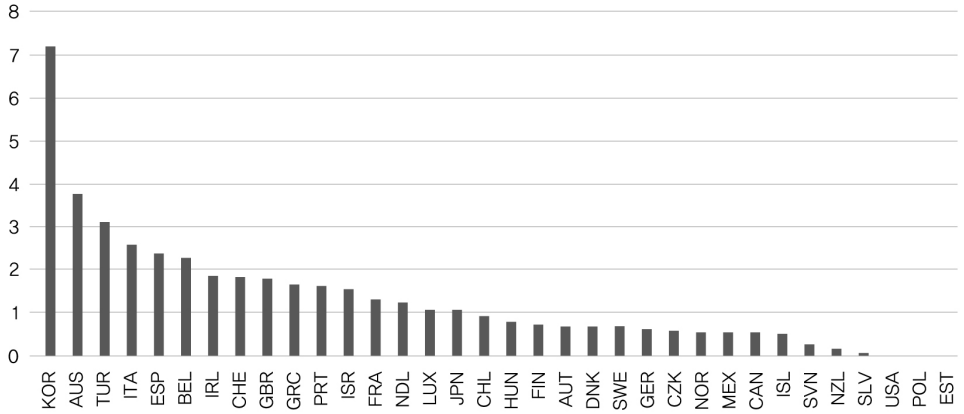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12.

한편 본고에서 좀 더 주목하려고 하는 문제는 부동산 관련세금과 소득세의 세 부담 비교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의 비중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선진국들이 대부분 소득세를 근간으로 하는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보유세는 소득세에 비해 그 비중이 낮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렇지만 소득세와 보유세의 비중은 국가별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인소득세 대비 보유세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의 경우 보유세수는

3) 엄밀하게 OECD의 Revenue Statistics에서 우리나라의 취득세에 해당하는 구분은 따로 없다고 볼 수 있다. OECD 기준에 우리나라 보유세는 부동자산에 대한 반복 과세(Recurrent taxes on immovable property; 코드 4100)에 해당하며 취득세는 금융 및 자본 거래에 대한 과세(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code 4400)에 해당한다. 즉 여기에는 증권거래세가 포함되는데 이 세금의 비중이 높지 않으므로 국제비교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리라는 전제 하에 이 자료를 이용하였다.

소득세수의 40%를 넘고 있다. 보유세 비중이 높았던 미국도 소득세 대비 보유세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도 동 비중이 20%를 넘어 높은 편에 속하고 있다.

그렇지만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한 부동산 관련 세금의 총합을 소득세와 대비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소득세와 비교할 때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된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개인소득세의 70%가 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3] 개인소득세 대비 부동산 보유세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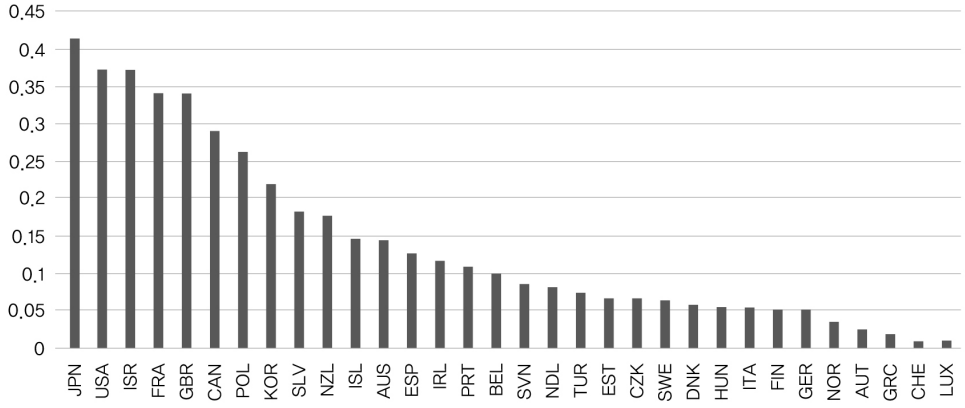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12.

[그림 4] 개인소득세 대비 재산관련(보유세+거래세) 세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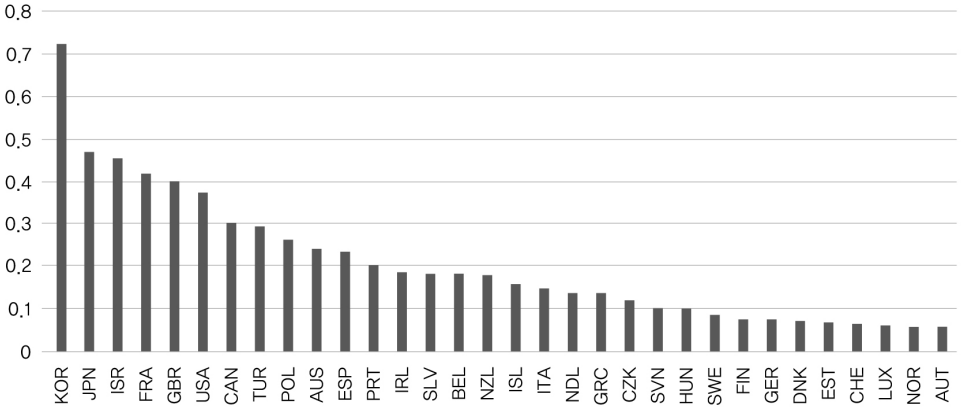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12.

물론 이 원인은 개인 소득세의 비중이 낮은 편이며 부동산 관련 조세, 특히 거래세의 비중은 가장 높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국민에게 부과된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은 국제비교를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의 부담이 시계열적으로는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보자. 우선 총 조세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80년대 말에 가장 저점을 이루다가 1990년대 초반에 큰 폭으로 올라간 바 있다. 1990년대의 급격한 상승 이후에는 다시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2000년대 초반 이후 다시 급격한 상승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980년대 말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매우 큰 폭으로 이루어진 시기였으며 1980년대 전반에 걸쳐 부동산 경기가 좋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 시기에 보유세 비중이 낮았던 것은 다소 의외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동산 경기가 좋았고 부동산 가치 상승이 크게 이루어지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조세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다는 사실은 보유세가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에 상응하는 세수 상의 기여를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러한 인식이 1980년대 후반의 토지 공개념의 도입의 원인 중 하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림 5] 우리나라 총 조세 중 부동산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12.

자료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확인된다. 1980년대 말에 부동산 경기가 정점에 달한 후에 부동산 보유세가 강화된 것이 1990년대 초반의 세수비중 증가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도 일시적인 것으로 이후의 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보유세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부동산 보유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은 2000년대 이후로, 이 역시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시기가 지난 후에 강화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보유세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동산 경기를 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시절을 놓치고 침체기에 부담을 높임으로써 경기 침체기의 납세자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줄 수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소득세 대비 보유세 부담 추이 역시 유사한 순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소득세 대비 보유세의 상대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시기에 뒤이어 급격한 증가의 시기가 오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총 조세 중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든 소득세 대비 보유세 비중이든 2011년이라는 시점이 시계열로 보자면 가장 높았던 정점에서 다소 낮아지는 도중에 있다는 점이다.

[그림 6] 소득세 대비 보유세 부담의 변화 추이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12.

이상에서 2010년 시점에서 OECD 국가들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 및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보이는 시계열적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부동산 관련 세 부담 중에서도 보유세만 놓고 보자면 우리나라의 보유세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히 높다고는 보기 어렵다. 하지만 소득세와 대비한 보유세의 비중은 다소 높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소득세에 비해 높은 보유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느끼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계열적으로 볼 때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시기에는 소득세 대비 보유세 비중이 낮아지다가 부동산 경기가 정점을 지난 이후에 소득세 대비 보유세 비중이 갑작스럽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안정되어 가는 시기에 갑작스럽게 높아지는 세 부담 역시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느끼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국가수준 혹은 거시수준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실제에 비해 과도하게 체감될 수 있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의 보유세와 소득세 사이의 관계를 가구 수준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어지는 장들에서 미시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Ⅲ. 미시자료를 통해 본 가구의 소득-자산 분포와 세 부담

본 장에서는 재정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 간 소득 및 자산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를 살펴본다. 본고의 분석 기간은 보유세의 부담이 높아진 2007년에서 2011년까지의 기간이다. 물론 더 긴 시계열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겠지만, 일단 갑자기 높아진 보유세 부담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으로 전반적인 보유세 부담 증가가 많은 논쟁과 조세 저항으로 이어졌던 시기부터 분석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이 기간 동안 소득과 자산 분포를 구할 수 있는 자료로는 재정패널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가 있다. 두 자료 중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는 이유는 소득과 자산뿐 아니라 세금과 관련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고의 주된 분석 대상 기간인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기간에 패널의 성격을 유지했다는 점도 이 자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의 구입과 구입가격에 대한 정보로 거래세를 추정해 볼 수도 있다는 점과 소비에 대한 정보도 가계금융조사에 비해 상세하게 제공된다는 추가적인 장점도 있다.

1. 부동산 자산 보유와 보유세 부담

우선 재정패널에 나타난 가구들의 주택 점유 형태부터 살펴보자. [표 1]은 재정패널 자료의 주택 점유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각 연도별로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재정패널에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의 비중은 대략 60%, 전세가 20%, 보증부 월세가 약 12%이고 무보증월세나 기타가 8%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표 1] 재정패널 데이터의 주택 점유 형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자가	3076	61.3%	3046	60.4%	2875	59.5%	2882	60.3%	2858	60.3%
전세	1093	21.8%	1120	22.2%	1039	21.5%	1002	21.0%	939	19.8%
보증부 월세	631	12.6%	589	11.7%	539	11.2%	527	11.0%	564	11.9%
무보증 월세	111	2.2%	137	2.7%	120	2.5%	96	2.0%	91	1.9%
기타	103	2.1%	147	2.9%	257	5.3%	271	5.7%	290	6.1%

자료: 재정패널, 각 연도.

한편 재정패널 자료는 보유세와 관련하여 주택별로 납부액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 정보에 따르면 표본 가구의 63%가 보유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8.2%는 두 주택 이상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를 납부하고 있다. 10%는 토지에 대한 보유세도 납부한다. 납부 가구 기준으로 보유세 납부 총액은 약 31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재정패널의 보유세 평균 액수는 김경환 외(2012)의 연구에서 도출된 액수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4)]

4) 이러한 보유세액의 차이는 주로 본 연구에서 이용된 자료인 재정패널과 김경환 외(2012)에서 이용된 가계금융조사 자료의 자산 평가액 차이에서 기인할 것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자산가치의 평균값들을 비교해 보면 자가의 평가액의 경우는 가계금융조사 2억 2,806만원, 재정패널 2억 1,316만원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자가 외 가구는 재정패널의 평균값이 2억 6,917원으로 가계금융조사의 평균값과 3억 3,799만원과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김경환 외(2012)의 연구에서는 자산 평가액을 기초로 보유세를 계산했으며 재정패널은 보유세액 자체를 응답했다는 차이도 있다. 산출된 보유세는 각 물건 또는 개인별 각종 감면사항을 충분히 반영 못한다는 점에서 실제 납부액을 과다하게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

[표 2] 재정패널의 부동산 보유세 납부 현황

(금액단위: 만원)

	납부가구비중	납부가구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주택1	63.0%	3044	23.93	48.73	1	1249
주택2	8.2%	12	21.84167	27.21766	2.6	100
주택3	0.6%	28	17.28571	16.0943	1	60
주택4	0.2%	7	16.14286	13.05665	2	30
주택5	0.1%	4	56.5	59.88044	1	130
토지	10.4%	489	15.73088	34.00826	1	400
건물	2.0%	98	60.11224	98.66134	3	800
종부세	1.0%	44	142.9318	173.935	5	800
총액			30.79	70.59	1	1249

자료: 재정패널 5차연도 자료

한편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보유세와 연령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정 연령까지는 보유세 부담액이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주택 분 재산세는 58세, 재산세 합의 경우는 60세에 최고에 달하고 있다. 토지 분 재산세의 경우는 가구주 연령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표 3] 연령과 재산세 사이의 관계

	주택재산세	토지재산세	건물재산세	보유세 합
가구주 연령	2.353***	0.0869	0.299**	2.736***
	(0.290)	(0.0839)	(0.116)	(0.345)
연령제곱	−0.0202***	−0.000211	−0.00253**	−0.0229***
	(0.00261)	(0.000754)	(0.00104)	(0.00311)
상수	−47.95***	−2.313	−6.987**	−57.15***
	(7.673)	(2.220)	(3.078)	(9.138)
관측치수	4,708	4,731	4,741	4,700
R^2	0.015	0.006	0.002	0.015

주: 괄호안은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자료: 재정패널 5차 연도 자료

2. 가구의 자산-소득 결합분포와 가구 세 부담

이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소득과 자산평가액을 토대로 소득세와 보유세액을 도출하여 가구 수준에서 두 세금의 부담 수준에 대해 평가해 본다. 특히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를 토대로 가구들을 유형화 하여 유형별 세 부담 수준을 도출하며 소득세와 보유세 합의 누진성 여부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우선 가구 수준에서 소득세와 보유세의 세 부담을 도출해 보자.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의 경우 재정패널 자료를 토대로 세법을 적용하여 개인소득세의 합으로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추정한 송헌재(2012)의 연구에서 도출된 소득세 납부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위의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자료의 표본에서 탈락한 가구들의 특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세법에 의거해 가구 소득세액을 도출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세법에 따라 개인별 소득을 기반으로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의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개인별로 소득세액을 산출하고 가구 내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개인들의 소득세액을 합하여 가구의 소득세액을 도출하고 있다.

재정패널 5차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된 자료에 따르면 분석 대상 4762 가구들 중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가구는 43% 정도이다. 그리고 가구 총소득 대비 가구원의 소득세 합의 비율은 평균 1.2%에 불과하다.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들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가구의 소득세 평균은 3.1% 정도 수준이다. 또한 재정패널 5차연도 조사의 가구소득 합 대비 가구 총 납세액은 1.6% 가량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약 3.6%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보유세액에 대한 추정은 김경환 외(2012)의 연구에서와 같이 재정패널 자료에서 보고된 자산평가액 자료를 바탕으로 세법에 의거하여 주택, 건물, 토지 등에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재정패널 5차 연도의 경우 보유세를 직접 보고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세법에 의거하여 도출된 보유세액과 직접 보고한 보유세액 두 변수를 비교할 수도 있는데 세법에 의거하여 도출된 액수가 다소 높게 나오고 있다. 이하의 분석에서는 소득세 도출방식과 일관되게 보고한 자산 가치를 근거로 세법에 따라 도출한 보유세액 자료를 활용하였다. 물론 이 경우에 산출된 보유세는 각 물건 또는 개인별 각종 감면사항을 충분히 반영 못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하에서 시행하는 분석의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제 도출된 세 부담을 바탕으로 자산-소득 분포에 따른 세 부담의 분포에 대해 살펴보자.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자료의 자산-소득 분포를 근거로 가구의 유형을 많게는 25개,

적게는 5개로 나누어 보았다. 가구 유형을 나누기 위해 우선 자산과 소득을 각각 5분위로 나눈다. 그러면 소득과 자산 분포에 따라 25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득과 자산의 결합 분포에 의거한 가구 유형 구분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물론 이들 25개 유형 가운데 보유세로 인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게 될 유형은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많은 자산을 보유한 1-4나 1-5유형이 될 것이다. 이들 유형이 갖는 제반 특징을 별도로 살펴봄으로써 이들 유형에 속한 가구들이 실질적으로 세 부담으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소 자의적이지만 25개의 유형을 다시 5개의 유형으로 통합해 볼 수도 있다. 우선 [표 4]에서 대각선에 해당하는 유형들은 자산-소득의 결합분포로 보았을 때 상대적인 의미에서 소득과 자산이 균형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대각선 위쪽에 있는 유형은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들이다. 이들 가구들을 다시 소득대비 자산 가액이 상대적으로 큰 가구와 매우 큰 가구로 양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각선 아래의 가구들은 소득에 비해 자산이 적은 가구들인데 이들에 대해서도 소득대비 자산 총액이 낮은 가구와 상대적으로 더욱 낮은 가구들로 유형 구분을 해 볼 수 있다. 이렇게 25개 유형 혹은 5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에 속하는 가구들의 비중과 이들 가구들이 겪는 소득세 및 보유세 부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표 4]에서 5개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로 한다.

- 소득대비 자산 매우 많음: 1-4, 1-5, 2-5, 3-5, 4-5 유형
- 소득대비 자산 많음 : 1-2, 1-3, 2-3, 2-4, 3-4 유형
- 소득과 자산 균형 : 1-1, 2-2, 3-3, 4-4, 5-5 유형
- 소득대비 자산 적음 : 3-2, 4-2, 4-3, 5-3, 5-4 유형
- 소득대비 자산 매우 적음: 2-1, 3-1, 4-1, 5-1, 5-2 유형

[표 4] 소득-자산 분포에 따른 구분

(단위: 만원)

자산 80 분위 이상 (3억 이상)	1-5 유형	2-5 유형	3-5 유형	4-5 유형	5-5 유형
자산 60~80 (1억 5천~3억)	1-4 유형	2-4 유형	3-4 유형	4-4 유형	5-4 유형
자산 40~60 (5250~15000)	1-3 유형	2-3 유형	3-3 유형	4-3 유형	5-3 유형
자산 20~40 (480~5250)	1-2 유형	1-2 유형	3-2 유형	4-2 유형	5-2 유형
자산 20 이하 (480 이하)	1-1 유형	2-1 유형	3-1 유형	4-1 유형	5-1 유형
	소득 20분위 이하 (0~1320) (0~1450)	소득 20~40 (1320~2520) (1450~2820)	소득 40~60 (2520~4056) (2820~4400)	소득 60~80 (4056~6000) (4400~6776.6)	소득 80분위 이상 (6000~) (6776.6~)

주: 재정패널에 5차연도 자료에 의거한 소득과 자산의 5분위 구분을 바탕으로 작성됨. 소득과 자산의 괄호 부분은 분위를 나누는 소득 혹은 자산액 구분점들을 의미하며 소득에서 아래 괄호 부분은 귀속소득 포함 시 구분점들임.

우선 25개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 가구들이 보이는 특징은 [표 5]과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소득에서 귀속소득을 감안하지 않은 경우와 자가 가구소유주들에 대해서 주택 가치의 3%를 귀속소득으로 간주하여 귀속소득까지 포함한 경우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재정패널 조사의 소득-자산 결합 분포를 바탕으로 한 유형구분에서 보면 보유세로 인해 가장 큰 부담을 가지게 될 저소득-고자산 보유 유형 가구의 소득은 583만원이며 소득대비 보유세 비중도 13.6%에 이른다. 하지만 이 유형에 속하는 약 1.4%의 가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가구들에서 소득 대비 보유세는 1% 미만이다. 귀속소득을 감안할 경우에 가장 보유세 부담이 높은 가구들의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예컨대 약 0.7%에 해당하는 저소득-고자산 보유가구의 소득대비 보유세액 비율의 평균값은 7.5% 정도까지 낮아진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보유 자산의 가치가 상위 20분위 이내에 드는 가구들의 경우 소득에 따른 자산 가치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즉 소득이 낮으면서 자산 보유가 많은 가구들의 경우 소득이 더 높은 가구들에 비해서 자산가치가 낮은 편이 아니다. [표 5]와 [표 6]에서는 자산보유 기준으로는 최상위이면서 소득기준으로는 하위에 속하는 가구들이 보유한 자산의 평균 가치가 소득분위가 더 높은 가구들의 평균 자산가치보다 더 높은 경우도 발견된다. 이는 자산이 낮은 소득수준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각 가구 유형별 평균 연령에 주목해 보면 소득이 20분위 이하에 속하는 가구들은 자산 보유액에 상관없이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 고령층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으며 하위 20분위의 평균소득은 자산액이 증가할수록 높아진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연령대별로 소득–자산의 결합분포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표 7]에서는 연령대별 소득–자산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5세 단위로 연령을 나누고 소득–자산 분포 역시 5개의 범주로 나누어 연령대와 소득–자산 분포 범주 별로 가구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았다. 전 연령대를 보면 소득과 자산이 균형을 이루는 가구가 약 31%로 가장 많게 분포되어 있다. 반면 소득대비 자산액이 크게 많은 가구나 크게 적은 가구는 13~14%로 적게 분포되어 있는 편이다. 소득대비 자산이 적은 가구(약 19.2%) 보다는 많은 가구가 (약 21.9%) 다소 많게 분포되어 있다.

한편 각 연령대별 소득–자산 분포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체로 낮은 연령대에서 소득대비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들이 많지만 연령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소득대비 자산이 많은 가구들이 늘어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30대 이하에서는 소득대비 자산이 많은 가구의 비중이 10% 정도로 극히 적은 편이다. 하지만 66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소득대비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는 6%가량에 머무는 반면 소득대비 자산이 많은 가구들 쪽의 비중이 2/3 가까운 수치로 늘어나고 있다.

소득분위와 자산분위가 같은 가구들의 비중은 50대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다. 또한 50대 초반에 해당하는 연령까지는 소득대비 자산이 적은 가구들 쪽이 소득대비 자산이 많은 가구들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연령분포 상으로 높은 연령에 해당하는 가구들일수록 상대적으로 소득에 비해 많은 자산을 보유하면서 소득세보다 높은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이것이 보유세가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도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는 정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표 5] 소득재산 결합분포와 특징 (재정패널조사, 2011년)

(단위: 금액은 만원, 비중은 %)

	비중	연령	소득	자산	부동산	금융	부동산 비중	소득세	보유세	소득세 비중	보유세 비중
소득 1 자산 1	8.50	63.47	501.86	1472.33	544.21	268.75	36.96	0.67	0.33	0.13	0.07
소득 1 자산 2	4.67	64.49	662.82	7489.53	4630.66	765.25	61.83	0.16	2.54	0.02	0.42
소득 1 자산 3	2.62	60.48	620.50	15428.69	10557.25	1028.86	68.43	0.66	5.75	0.11	1.08
소득 1 자산 4	1.45	58.87	653.46	27419.55	20523.69	2371.03	74.85	1.21	16.08	0.19	2.60
소득 1 자산 5	1.38	62.31	582.71	70882.12	53831.15	6437.59	75.94	0.83	79.40	0.14	13.63
소득 2 자산 1	6.88	43.19	1749.62	1864.12	294.55	419.63	15.80	3.21	0.18	0.18	0.01
소득 2 자산 2	6.09	48.58	1768.89	7781.25	3632.14	897.63	46.68	2.99	2.20	0.17	0.12
소득 2 자산 3	4.82	48.22	1864.12	15121.65	8939.38	1332.04	59.12	4.00	5.58	0.21	0.31
소득 2 자산 4	2.67	54.15	1838.42	28124.87	20300.48	2407.46	72.18	3.88	17.84	0.21	0.98
소득 2 자산 5	1.81	57.22	1856.28	76684.61	60008.98	3426.95	78.25	4.62	80.56	0.25	4.20
소득 3 자산 1	3.20	43.35	3017.82	2112.51	420.28	601.81	19.89	10.08	0.24	0.33	0.01
소득 3 자산 2	5.41	45.56	3095.37	8113.41	4363.11	986.57	53.78	10.06	2.22	0.32	0.07
소득 3 자산 3	5.17	43.40	3137.38	15619.74	8112.19	1548.11	51.94	16.56	5.20	0.53	0.16
소득 3 자산 4	3.64	46.43	3171.66	27010.23	19103.27	2370.55	70.73	14.53	14.02	0.46	0.43
소득 3 자산 5	2.56	54.05	3152.52	71770.78	57446.38	4984.12	80.04	17.42	73.81	0.55	2.49
소득 4 자산 1	1.48	42.92	4540.07	2305.33	307.71	934.20	13.35	52.20	0.23	1.15	0.00
소득 4 자산 2	2.77	44.14	4491.82	8102.12	3689.02	1397.98	45.53	40.35	2.23	0.90	0.04
소득 4 자산 3	5.57	43.78	4663.87	15551.14	9113.94	2129.86	58.61	34.72	5.57	0.74	0.11
소득 4 자산 4	6.41	44.13	4825.05	28153.48	18419.57	3286.23	65.43	52.43	12.33	1.09	0.27
소득 4 자산 5	4.37	48.72	4899.70	74575.46	52392.94	7792.51	70.25	44.27	58.87	0.90	1.32
소득 5 자산 1	0.36	47.67	7865.68	2300.48	477.66	817.78	20.76	60.72	0.13	0.77	0.00
소득 5 자산 2	0.92	46.88	7906.26	8409.23	4033.53	1998.43	47.97	61.52	2.26	0.78	0.03
소득 5 자산 3	2.48	47.46	8528.50	16070.16	10272.13	3040.90	63.92	158.34	5.86	1.86	0.07
소득 5 자산 4	5.45	45.35	8414.51	28668.47	16818.45	5218.90	58.67	182.90	12.24	2.17	0.13
소득 5 자산 5	9.32	47.31	9609.01	96214.98	66323.24	11545.00	68.93	292.96	94.19	3.05	0.96

[표 6] 소득재산 결합분포와 특징 (재정패널조사, 2011년, 자가가치*3%를 소득으로 포함)

(단위: 금액은 만원, 비중은 %)

	비중	연령	소득	자산	부동산	금융	부동산 비중	소득세	보유세	소득세 비중	보유세 비중
소득 1 자산 1	9.89	60.70	616.92	1492.68	500.71	280.15	33.54	0.82	0.33	0.13	0.05
소득 1 자산 2	5.10	62.46	815.28	7447.57	4136.98	736.92	55.55	0.11	2.54	0.01	0.31
소득 1 자산 3	2.41	57.74	818.56	14954.65	8832.24	1023.26	59.06	0.80	5.75	0.10	0.70
소득 1 자산 4	1.03	57.18	867.90	27163.47	17142.48	2678.01	63.11	1.19	16.08	0.14	1.85
소득 1 자산 5	0.68	59.56	1051.03	69352.81	45335.05	4692.93	65.37	1.06	79.40	0.10	7.55
소득 2 자산 1	6.07	43.04	1949.21	1902.79	299.94	446.35	15.76	3.88	0.18	0.20	0.01
소득 2 자산 2	6.05	48.67	1960.07	7870.18	3810.06	947.01	48.41	3.11	2.20	0.16	0.11
소득 2 자산 3	4.75	50.15	2012.64	15127.80	8598.09	1436.40	56.84	4.47	5.58	0.22	0.28
소득 2 자산 4	2.50	55.73	1997.57	28031.42	19177.40	2604.30	68.41	2.46	17.84	0.12	0.89
소득 2 자산 5	1.62	58.02	1960.89	67800.79	50391.99	5547.98	74.32	2.97	80.56	0.15	4.11
소득 3 자산 1	3.09	43.69	3255.27	2223.78	439.37	671.49	19.76	14.39	0.24	0.44	0.01
소득 3 자산 2	5.84	45.63	3370.39	8059.54	4180.77	1057.54	51.87	12.16	2.22	0.36	0.07
소득 3 자산 3	5.93	43.35	3387.44	15630.02	8467.30	1548.76	54.17	15.86	5.20	0.47	0.15
소득 3 자산 4	3.98	47.16	3462.36	27212.64	19116.07	2347.55	70.25	13.21	14.02	0.38	0.40
소득 3 자산 5	2.38	53.43	3455.62	68324.66	50098.34	4399.00	73.32	12.83	73.81	0.37	2.14
소득 4 자산 1	1.19	42.47	5016.12	2369.72	394.31	894.92	16.64	53.05	0.23	1.06	0.00
소득 4 자산 2	2.19	44.39	4988.98	8171.36	4474.63	1388.30	54.76	49.73	2.23	1.00	0.04
소득 4 자산 3	5.28	44.19	5046.72	15676.01	9913.21	2091.70	63.24	36.86	5.57	0.73	0.11
소득 4 자산 4	6.68	44.13	5246.88	27844.36	18099.48	3235.68	65.00	48.76	12.33	0.93	0.23
소득 4 자산 5	4.66	49.63	5292.40	68526.47	46119.55	5931.02	67.30	42.50	58.87	0.80	1.11
소득 5 자산 1	0.18	49.99	9668.53	1861.68	139.62	846.02	7.50	104.95	0.13	1.09	0.00
소득 5 자산 2	0.68	47.08	8724.93	8645.55	4282.27	2036.96	49.53	62.11	2.26	0.71	0.03
소득 5 자산 3	2.28	47.61	9051.87	16241.38	10594.36	3067.37	65.23	168.06	5.86	1.86	0.06
소득 5 자산 4	5.43	45.71	8887.23	29007.08	18533.56	5115.98	63.89	187.73	12.24	2.11	0.14
소득 5 자산 5	10.09	48.40	10490.01	99791.73	72453.62	11807.87	72.60	268.76	94.19	2.56	0.90

[표 7] 연령대별 소득-자산 분포 현황 (재정패널, 2011년)

(단위: 가구수, %)

연령대	소득대비 자산 과소	소득대비 자산 적음	소득-자산 균형	소득대비 자산 많음	소득대비 자산 과다	계
30이하	58	37	56	17		168
	(34.52)	(22.02)	(33.33)	(10.12)		
31~35	87	121	95	48	26	377
	(23.08)	(32.1)	(25.2)	(12.73)	(6.9)	
36~40	96	148	155	71	48	518
	(18.53)	(28.57)	(29.92)	(13.71)	(9.27)	
41~45	139	150	215	75	81	660
	(21.06)	(22.73)	(32.58)	(11.36)	(12.27)	
46~50	112	170	194	67	76	619
	(18.09)	(27.46)	(31.34)	(10.82)	(12.28)	
51~55	65	142	231	70	74	582
	(11.17)	(24.4)	(39.69)	(12.03)	(12.71)	
56~60	43	69	139	88	64	403
	(10.67)	(17.12)	(34.49)	(21.84)	(15.88)	
61~65	23	42	107	128	86	386
	(5.96)	(10.88)	(27.72)	(33.16)	(22.28)	
66~	33	29	306	473	187	1,028
	(3.21)	(2.82)	(29.77)	(46.01)	(18.19)	
계	656	908	1,498	1,037	642	4741
	(13.84)	(19.15)	(31.6)	(21.87)	(13.54)	

자료: 재정패널 5차 연도 가구 자료

이상에서 살펴본 자산-소득 분포는 생애주기 소비이론(life cycle consumption)에 따라 일정 정도 설명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소비는 소득의 함수이기도 하지만 자산의 함수가 될 수도 있다. 즉 고소득층의 소비는 소득보다는 이전에 축적해 놓은 자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소득과 자산 분포 상 다양한 유형의 가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가구의 소비가 소득과 자산에 의존하는 정도에서도 다양한 패턴이 있음을 암시한다. 그럼 이제 소비와 소득 자산 사이의 관계에 대해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자. 회귀분석은 재정패널 가구자료에서 제시된 연간 총 소비에 로그값을 취한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였으며 연간 총소득과 총자산 보유액의 로그값들을 설명변수로 하였다. 소득과 자산을 통제할 때에도 고령가구들의 소비가 억제되

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기 위해 연령과 연령제곱 변수도 회귀식에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표 8]은 재정패널 자료를 통해 소비의 소득에 대한 탄력성과 자산에 대한 탄력성을 가구의 소득–자산 분포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5] 회귀분석을 통해 가구 유형별로 소득과 자산 의존도가 뚜렷이 대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표본에서는 소비의 소득에 대한 탄력성은 0.42, 자산에 대한 탄력성은 0.08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과 자산이 같은 분위에 속한 가구들의 경우는 소비의 소득탄력성이 0.48, 자산 탄력성은 0.11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소득대비 자산이 적은 가구들은 소득탄력성이 훨씬 더 높으며 특히 소득분위에 비해 자산분위가 크게 낮은 가구들의 경우는 소득탄력성은 0.84인 반면 자산탄력성은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즉 소득대비 자산이 적은 경우에는 소비가 자산의 과소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모습이다.

하지만 소득에 비해 자산이 많은 가구들은 자산에 대한 탄력성이 높은 값으로 나타난다. 특히 소득분위에 비해 자산 분위가 크게 높은 가구들의 경우는 자산에 대한 탄력성(0.35)이 소득에 대한 탄력성(0.11)보다 커서 이들 가구의 소비가 자산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한편 연령과 소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소득과 자산의 분위가 같거나 소득분위가 자산분위에 비해 높은 가구들의 경우에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소비가 증가하다가 일정 연령 이후에 다시 감소하는 생애주기 패턴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소득과 자산 분위가 같은 가구들의 경우는 소득과 자산을 통제했을 경우 소비가 극대에 이르는 연령이 46세로 나타난다. 전체 표본에서는 이 연령이 41세로 앞당겨진다. 즉 높은 연령에서 소비를 줄여가는 일반적인 패턴을 읽을 수 있다.[6]

소득에 비해 자산이 많은 가구들의 경우는 연령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연령제곱의 계수만 음수로 유의하다. 즉 같은 소득과 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연령이 오를수록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즉 어떤 유형의 가구들이라도 적어도 40대 중반 이후에는 소비를 줄여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

5) 소비의 소득탄력성과 자산탄력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로그 변환을 해야 한다. 소득이나 자산이 0인 가구는 1의 값을 부여하여 이들 가구가 회귀분석 표본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였다.

6) 회귀분석 결과를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소득과 자산을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소비가 정점에 이르는 연령은 43세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8] 가구 유형별 소비함수 추정(재정패널 5차 연도)

	전체표본	소득대비 자산 과소	소득대비 자산 적음	소득-자산 균형	소득대비 자산 많음	소득대비 자산 과다
log(소득)	0.422***	0.824***	0.671***	0.481***	0.351***	0.112***
	(0.00867)	(0.0470)	(0.0402)	(0.0281)	(0.0187)	(0.0165)
log(자산)	0.0795***	−0.0541***	−0.00750	0.111***	0.173***	0.353***
	(0.00411)	(0.0196)	(0.0123)	(0.0120)	(0.0156)	(0.0368)
연령	0.0389***	0.0389***	0.0542***	0.0270***	0.00789	0.0135
	(0.00361)	(0.0123)	(0.00800)	(0.00584)	(0.00657)	(0.0121)
연령제곱	−0.0466***	−0.0430***	−0.0561***	−0.0293***	−0.0180***	−0.0297***
	(0.00331)	(0.0132)	(0.00824)	(0.00549)	(0.00573)	(0.0105)
상수	2.849***	0.403	1.044***	2.206***	3.137***	3.251***
	(0.102)	(0.381)	(0.321)	(0.192)	(0.229)	(0.470)
관측치수	4,149	292	908	1,270	1,037	642
R-squared	0.658	0.656	0.401	0.761	0.656	0.451

주: 괄호 안은 표준 오차, ***는 1%, **는 5%, *는 10%에서 유의

위의 회귀 분석들은 가구들의 소비패턴이 소득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자산의 역할도 크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세 부담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줄인다는 점에 있다. 보유세의 부담이 높다고 할 때도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그만큼 줄인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결과적으로 가처분 소득을 얼마나 감소시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이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는 소득과 세 부담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에 있어 소득에는 자가 소유에 따른 귀속소득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며 세 부담에는 소득세와 함께 자산 보유에 따른 보유세까지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Ⅳ. 소득세와 보유세 합의 누진도 평가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도출된 소득세 및 보유세액과 소득과 자산의 분포에서 도출된 가구 유형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세와 보유세 합의 누진성에 대해 살펴본다. 누진성 추정을 위해 소득대비 소득세와 보유세 합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세금액을 T,

소득을 Y라고 할 때 누진도의 정의($\frac{d(T/Y)}{dY} > 0$)에 따라 소득대비 세 부담과 소득의 관계에서 소득의 계수가 양수라면 누진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누진성에 대한 평가는 소득세와 보유세 합을 소득으로 나눈 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소득을 주요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소득 외의 설명변수로 연령과 연령제곱을 포함하였다.

[표 9]는 전체 가구와 소득–자산 분포에서 도출한 가구 유형별로 누진성 여부를 추정하고 있다.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소득세와 보유세를 합한 세 부담은 누진적이지 않으며 비례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구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소득대비 자산이 적거나 소득과 자산이 균형을 이루는 가구들 사이에서는 누진적이다. 하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득에 비해 자산의 분위가 크게 높은 가구들 사이에서는 소득세와 보유세를 합한 세 부담은 역진적인 성격을 갖는다. 즉 소득대비 자산이 적은 가구들 사이에서는 누진성이, 소득대비 자산이 많은 가구들 사이에서는 역진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누진성도 역진성도 갖지 않는 것이다.

[표 9] 가구 유형별 (소득세+보유세) 누진성 추정 (재정패널, 2011년)

	전체표본	소득대비 자산 과소	소득대비 자산 적음	소득–자산 균형	소득대비 자산 많음	소득대비 자산 과다
소득	−0.000632	9.78e−05***	0.000291***	0.000395***	−0.0219**	−0.00441***
	(0.000511)	(1.71e−05)	(2.12e−05)	(1.55e−05)	(0.00888)	(0.00148)
연령	−0.0679	−0.0474**	−0.0666*	0.0311	−2.239	−0.213
	(0.784)	(0.0206)	(0.0374)	(0.0284)	(4.283)	(1.436)
연령제곱	−0.0906	0.0384*	0.0556	−0.0211	0.773	−0.0957
	(0.711)	(0.0199)	(0.0373)	(0.0252)	(3.783)	(1.258)
상수	11.93	1.444***	1.367	−1.253*	147.6	34.75
	(20.36)	(0.505)	(0.896)	(0.751)	(117.0)	(39.24)
관측치수	4,345	525	952	1,562	829	477
R-squared	0.001	0.071	0.170	0.333	0.010	0.020

주: 괄호 안은 표준 오차, ***는 1%, **는 5%, *는 10%에서 유의

하지만 귀속소득을 감안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제 귀속소득을 포함한 경우의 변화를 살펴보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귀속소득은 단순히 가구의 소득에 자가 소유가구에 대해 자가 가치의 3%를 합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귀속소득을 포함

할 경우 귀속소득을 감안하지 않았을 때는 (소득세+보유세)의 부담에서 누진성을 보이지 않았던 전체표본에서도 누진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득대비 자산이 과다한 약 10%의 가구들에서만 소득대비 (소득세+보유세)가 역진적일 뿐 다른 유형의 가구들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보유세의 합이 누진적이거나 대략 비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세와 보유세의 합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귀속소득을 감안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누진도 평가방식이라고 한다면 보유세의 역진적인 성격은 결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표 10] 가구 유형별 (소득세+보유세) 누진성 추정; 귀속소득 포함 (재정패널, 2011년)

	전체표본	소득대비 자산 과소	소득대비 자산 적음	소득-자산 균형	소득대비 자산 많음	소득대비 자산 과다
소득	0.000253***	0.000100***	0.000269***	0.000330***	6.24e-05	-0.000432***
	(1.03e-05)	(1.74e-05)	(2.03e-05)	(1.23e-05)	(6.38e-05)	(0.000124)
연령	0.00156	-0.0539**	-0.0619	0.00965	0.0352	0.101
	(0.0171)	(0.0219)	(0.0395)	(0.0241)	(0.0325)	(0.126)
연령제곱	0.00363	0.0425**	0.0520	-0.00433	-0.0289	-0.0961
	(0.0155)	(0.0213)	(0.0393)	(0.0215)	(0.0288)	(0.109)
상수	-0.113	1.637***	1.220	-0.612	-0.414	1.402
	(0.443)	(0.532)	(0.950)	(0.634)	(0.878)	(3.465)
관측치수	4,324	471	916	1,690	835	412
R-squared	0.133	0.083	0.164	0.332	0.003	0.029

주: 괄호 안은 표준 오차, ***는 1%, **는 5%, *는 10%에서 유의

V. 맺는말

이 논문에서는 소득과 자산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구 단위 미시자료에 근거하여 가구의 소득세와 보유세를 합한 세 부담을 도출해 보고 누진 여부를 평가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재정패널 자료의 소득-자산 결합 분포를 바탕으로 세법에 따라 가구별 세 부담을 도출해 본 후 소득세와 보유세의 합이 소득과 자산의 분포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귀속소득의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귀속소득을 감안한다면 전반적

으로 우리나라의 가구수준에서 (소득세+보유세) 부담은 대체로 누진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소득에 비해 자산 분위가 높은 가구들의 경우에는 세 부담의 역진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재정패널 자료에 따르면 소득분위보다 자산분위가 높은 약 35%의 가구들 사이에서 (소득세+보유세)의 부담은 역진적이다. 하지만 귀속소득을 감안한다면 소득세와 보유세의 합은 대체로 누진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대비 자산이 과다하게 많은 약 10% 정도의 일부 가구들 사이에서만 역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유세 자체만 놓고 볼 경우 소득대비 자산이 과대하게 많다고 평가할 수 있는 약 1% 미만의 가구들에 있어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이 매우 크지만 대부분의 가구들에게는 소득대비 보유세가 1% 미만으로 큰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발견은 담세 능력이 떨어지는 가구에 대한 소득대비 보유세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유세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이 없지만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높지 않으며, 이들 가구들은 자산을 바탕으로 한 소비와 담세 능력을 보유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보유세를 낮추어 상대적으로 소수인 이들 가구가 재산을 좀 더 오래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반적으로 가구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보유세의 부담을 평가해 보면 소득세에 비해 보유세가 높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보유세 부담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보유세에 대비할 때 소득세 수준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하거나 소득대비 부동산 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높은 우리나라의 소득–자산 분포를 반영한다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을 것이다. 물론 보유세의 비중을 더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규범적 평가를 내릴 수 없는 한, 이러한 발견이 보유세 비중을 높이자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형평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유세와 소득세 간의 균형이라는 주제는 앞으로도 더 많은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했지만 재산관련 세금 중에서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교도 더 심층적인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보유세는 유량적 측면이 강하고 거래세는 저량적 측면이 강하므로 이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보다는 거주 주택을 일정기간 보유 후 팔 때 발생할 수 있는 두 개의 세 부담을 비교해 봄으로써 두 종류 세금의 부담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소득세와 보유세 합의 누진성 여부를 파악하는 수준에서 그쳤지만 귀속소득을 감안한 상태

에서 세후 세전의 소득분포 변화까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물론 본고에서 고찰한 이후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른 자산-소득 결합분포의 변화와 세 부담의 변화도 흥미로운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제들은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김경환 · 김준형 · 조무상, “우리나라 재산보유세 부담수준의 분석,” 2012년 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2.

김재형, “부동산정책의 종합적 검토와 발전방향 모색,” 협동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08.

노영훈, “우리나라 주택소유 및 점유유형별 가구들의 보유세 및 부채부담 분포,” 2013년 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3.

_____, 「우리나라가구의 주택소유 및 점유행태와 정책적 시사점」, 2013.

박명호, 「부동산 보유세제의 장기적인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보유세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11.

성명재, 「소득 · 자산 · 부채 결합분포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1.

손은경, “주요국의 주택가격 비교와 시사점,” 「KB경영정보리포트」 2013-11호,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3.

송헌재, “재정패널 2차년도 이탈가구와 대체가구의 특성 분석,” 「재정학연구」 제5권 제1호, 한국재정학회, 2012, 97~133쪽.

송헌재 · 성명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의 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제5권 제1호, 한국재정학회, 2012, 157~194쪽.

OECD, *Revenue Statistics*, OECD, 2012.

Joint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and the Tax Burdens of Korean Households

Kim, Jinyeong

Abstract

In this paper, we derive joint distribution of households' income and assets, and classify households into five categories; namely, those with (1) extremely low income compared to their wealth (2) relatively low income compared to their wealth (3) balanced possession of income and wealth (4) relatively high income compared to their wealth (5) extremely high income compared to their wealth. We find that the sum of the income and the property tax is roughly proportional without the imputed income, but progressive when we take the imputed income into account. The sum of the income and the property tax is regressive only for those households with extremely low income compared to their wealth, which accounts for less than 10 percent of the total number of households.

□ Keywords: income tax, property tax, household tax burden, joint distribution of income and assets